

3. 建設工事標準安全管理費計上 및 使用基準中 改正基準

勞動部 告示 第1996-36號 1996. 10. 22

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
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2조의”를 “제
26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
라 한다) 제32조 내지 제32조의 3의”로
한다.

제2조 제1항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3. 일반기술지도라 함은 규칙 제32조
제3항의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이 20
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
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
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
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
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4. 전문기술지도라 함은 규칙 제32조
제3항의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이 20억
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
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
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
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
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”를
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”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
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②별표 1의 건설공사의 종류는 산업재
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
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
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
한다. 다만,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
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
한다.

제3장에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제11조의 2(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
분야) 규칙 제3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
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분
야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수건설
공사(제3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
사 중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제외한
건설공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도분
야와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지도분야로

구분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기술지도) ①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는 별표 4에서 정한 횟수 이상 실시하되, 전문기술지도의 경우에는 기술사가 매3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건설업법에 의한 수중공사로서 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, 수 중공사를 제외한 순수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로서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
2.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
3. 전국 도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(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)

4.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·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할 건설공사

5.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(건설업자인 사업주가 공사 계약시 고시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)

제13조 제1항 중 “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”를 “공사 착공후 14일 이내

에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, 동조 제4항 제1호 중 “전담기술지도”를 “일반기술지도”로 하고 제2호 중 “정기기술지도”를 “전문기술지도”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, 동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한다.

제14조 제3항 중 “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”를 “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수수료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총액에 별표 4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4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제 제3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(1995-6호)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.

[별표 2]

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1.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전담 · 겸직 안전관리자 –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–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◦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– 고정식크레인 · 리프트 · 곤도라 ·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– 덤프트럭 · 이동식 크레인 ·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 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–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–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<p>※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·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</p> ◦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(월 금여액의 10% 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건설용 리프트 ·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–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(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) –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–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,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 작업 –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,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–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–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	안전 관리비 총액의 40% 이하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비계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작업 -건축물의 골조,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(5미터 이상에 한함)의 조립, 해체 또는 변경작업 -콘크리트 공작물(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)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-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-맨홀작업,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-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<p>※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)의 인건비 <p>※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.</p>	
2. 안전시설 비 등(공 사설계 내 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 제 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표준안전난간 -추락방지용 방망 -안전대결이용로우프 -개구부 덮개 -위험부위 보호덮개 -현장내 개구부, 맨홀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, 가설울타리 등 <p>※외부인 출입금지 ·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<p>※외부비계, 작업발판, 가설계단 등은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낙하,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방호선반 -낙하물방지망 	안전관리비 총액의 50% 이하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p>–경사법면 보호망(덮개)</p> <p>–암석방호세트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–출입금지판, 접근금지판, 현수막, 안전표어(포스터), 안전탑, 무재해기록판, 안전수칙판, 안전완장, 안전스티커, 안전깃발, 신호용렌턴(신호등), 차량유도 등 –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–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◦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헨스등 교통안전시설물 ※도로 확·포장공사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 ◦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–방진설비, 방음설비 –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–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◦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◦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·수리에 필요한 비용 –로울러기,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–크레인, 리프트, 곤도라, 데릭 등의 권리방지장치 –크레인, 승강기, 곤도라,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 장치 –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–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–연삭기의 덮개 –프레스·전단기의 방호장치 	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-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-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◦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※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◦고압가스,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◦안전모 등 개인보호구, 개인장구 보관시설 ◦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, 접지시설 등 ※가설전기설비, 분전반, 고압전선 보호관, 전신주 이 설비 등은 제외 ◦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◦가설사무실,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·화재경보기 ◦철근, 파이프, 크램프 등 돌출부에 절림방지를 위한 캡등 시설 ◦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◦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◦안전보건진단, 작업환경측정,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 선에 필요한 비용 ◦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 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	
3. 개인 보호 구 및 안 전장구 구 입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, 수리,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안전대,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, 보안경, 보안면, 용접용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-방진마스크, 방독마스크, 귀마개, 귀덮개, 방진장갑, 송기마스크, 면마스크, 산소호흡기, 공기호흡기, 차광 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	안전 관리 비 총액의 30% 이하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접용토시(자켓),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(또는 특정유니폼), 신호수용 반사조끼 ※일반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- 해상·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, 튜브 등 ※순시선, 구명정 등은 제외 ◦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 ◦ 절연장화, 절연장갑, 방전고무장갑 ※면장갑, 코팅장갑은 제외 ◦ 철골,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◦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, 조임대(각반) 	
4. 사업장의 안전 진단 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(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) -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※타법 적용사항 제외(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,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) ◦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,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◦ 분진,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소농도측정기 - 활선근접작업경보기 - 가스자동측정기(휴대용에 한함) -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- 조도계, 누전측정기 등 -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※매설물 탐지, 계측, 지하수 개발, 지질조사,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	안전 관리 비 총액의 30% 이하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·리프트 등 기계·기구의 완성검사·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(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) ◦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·리프트 등 기계·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(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) ◦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(차량구입비 제외) ◦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 비용 	
5.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및 보수 ◦ 안전관리자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및 보수 ◦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- 근로자 정기교육 - 신규채용시 교육 - 특별안전교육(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) -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◦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◦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,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- 타워크레인 조종업무(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) -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-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	안전 관리 비 총액의 30% 이하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-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-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◦ 교육교재, 교육용팜프렛, 슬라이드, 영화,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◦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, 세미나, 국내견학,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◦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·연수비 ◦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◦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◦ 안전교육장 책·결상, 교육용 비품 및 장비 ◦ 안전교육장내 냉·난방 설비 및 유지비 ※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◦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(견학포함) ◦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,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◦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(년 2회 이하) ※기공식,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◦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-무재해 선포식, 무재해 경연, 무재해 달성 경축 -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※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◦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◦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◦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	

항 목	사 용 내 역	사 용 기 준
6. 근로자의 건강 관리 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◦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◦ ※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◦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◦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, 방충비 ◦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◦ ※이동화장실, 급수·세면·샤워시설, 병·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	안전 관리 비 총액의 10% 이하
7.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(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) 	안전 관리 비 총액의 최고 20% 이하

[별표 4]

기술지도 수수료 요율표(안전관리비총액대비)

구분 공사금액	수수료 요율(%)	지도횟수기준
3억 원 미만	15.0	6
3~5억 원 미만	14.0	7
5~10억 원 미만	7.4	8
10~15억 원 미만	7.2	9
15~20억 원 미만	7.0	10
20~30억 원 미만	6.8	11
30~40억 원 미만	6.6	12
40~50억 원 미만	6.4	15
50~60억 원 미만	6.2	17
60~70억 원 미만	6.0	19
70~80억 원 미만	5.8	20
80~90억 원 미만	5.5	21
90~100억 원 미만	5.0	22

※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5%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.